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4-44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4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 사유

정부의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 T/F팀인 「규제개혁추진단」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구본청 부구청장 밑에 “규제개혁추진단”을 둠(안 제3조의2 제1항)
- 나. 신설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3월 30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」 제13조  
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기타 사항

가. 입법예고 : 생략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제2호  
(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)에 해당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4. 4. 10.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사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밑에 한시적으로 규제 개혁추진단을 둔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3조의2제1항 개정규정에 따른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| 개<br>정<br>안   |
|--|---|
| 제3조의2(한시기구)<br><u>&lt;신 설&gt;</u><br><br>(생 략) | 제3조의2(한시기구)<br><u>①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밑에 한시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.</u><br><u>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</u> |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|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안전행정국 총무과 임대민 |
| 연 락 처  | 02-3153-8216  |